

<p>록 위탁하거나 완전히 민간화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p>□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9조 내지 제11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자원봉사 주간 설정운영, 보험가입, 포상, 취업·진학에의 반영 권장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미흡하고 형식적인 방안에 불과 하며, 자원봉사 경력자에 대한 공직임용 등에서의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li> <li>○ 그러나 자원봉사경력자에 대하여 취업 또는 진학시 자원봉사경력을 성적에 반영하도록 직장이나 학교 등에는 권장도록 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책무로 정하고 있는 시장은 채용·승진 등 임용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li> </ul> <p>이는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모범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p> <p>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6조제2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체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하고,</p> <p>동조제4항 중 “기타 센터의”를 “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로 한다.</p> <p>안 제7조제1호 중 “경우”를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동조제3호 중 “후단의”를 “의”로 한다.</p> <p>안 제13조 중 “제6조·제7조 및 제12조의”를 “제6조 제2항·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로 한다.</p>	<p><b>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b></p> <p><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li> <li>나.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li> <li>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li> <li>라.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li> <li>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li> <li>바.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봉사활동</li> <li>사.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li> <li>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li> <li>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li> <li>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li> <li>카.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li> </ol> </li> <li>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li> <li>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li> <li>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li> </ol>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p>
---	---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제2장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제4조(설치 및 기능) ①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위치는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제5조(조직구성 등) ①센터에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두고, 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임기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8조(운영의 대행) ①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9조(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

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 4 장 보 칙

제12조(자문회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상호 호선토록 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권한 위임) 시장은 제6조제2항·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각종 사무 처리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 文化觀光局 主要業務報告

##### 월드컵의 體系的 準備 및 雾靄氣 造成

###### 1. 練習競技場 整備 및 캠프지 誘致

- 2002 월드컵 본선진출 국가축구팀 중 서울에서 경기를 치를 축구팀의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할 운동장을 정비하고

○ 본선진출국 선수단이 머물며 연습할 수 있는 캠프지를 적극 유치하여 개최지 홍보는 물론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 □ 월드컵 練習競技場 및 캠프지 候補施設

##### ○ 일반적인 조건

- 근처 주요공항에서 1시간이내, 인근 숙박시설로부터 15분이내, 정규시합을 가정 훈련할 수 있는 양질의 잔디면을 갖추어야 함.

○ 공식연습장 후보지 : 잠실주경기장, 목동경기장

○ 캠프지 후보지 : 공식연습장 2개소, 동대문운동장, LG구리구장, 국가대표연습장(미사리)

#### □ 推進現況

○ 2000. 2.17 : 공식연습장 선정(잠실주경기장, 목동경기장)

○ 2000. 3 : 월드컵연습경기장 개·보수계획 제출(서울시→조직위)

#### □ 向後計劃

○ 2000 상반기 : 잔디보식방안 검토(월드컵조직위원회)

○ 2000.12월 : 캠프지 유치 홍보활동 개시(경기장, 숙박여건 등)

○ 2001 상반기 : 연습경기장 등 잔디보식

○ 2001. 3~11월 : 연습장 부대시설 개·보수

○ 2001.12월 : 본선진출국 확정시 월드컵 캠프유치사업 본격 추진

#### 2. 2002 월드컵 文化行事 選定推進

2002 월드컵 분위기 조성과 함께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시민이 같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펼치기 위해 서울문화행사를 개발·선정 추진

#### □ 時期別 文化行事의 區分

○ 계기별 문화행사 : D-1년, D-100일, 경기장 상량식, 준공식 등

○ 게임전·후의 행사 : 개막전, 예선전, 16강전, 준결승전·후부대행사

○ 대회기간 서울전역의 문화행사

#### □ 推進現況

○ 월드컵문화행사 '축제기획위원회' 및 '실무